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산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 추가〉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59호)

〈방산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 추가〉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20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	5
2.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를 추가.....	16
※ 참고자료	
1. 방위산업공제조합 개요	23
2. 개정안에 따른 우주항공사업자의 비용절감 효과	25

I. 제안경위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9호)

-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1인
- 2) 발의연월일 : 2025. 11. 12.
- 3) 회부연월일 : 2025. 11. 13.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20호)

-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2인
- 2) 발의연월일 : 2025. 11. 13.
- 3) 회부연월일 : 2025.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9호)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최첨단 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은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최근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의 발전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우주항공산업은 아직은 유치(幼稚)산업으로서 향후 국가전략산업으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및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재해·책임 등에 관한 위험이나 사고 대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우주항공산업체들은 높은 보증·보험료를 지급하고 민간의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관련 민간 보험의 경우,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로 출재되고 있어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그러나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전산 시스템 개발, 전문 인력 채용, 초기 운영비 등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이 신설되더라도 우주항공산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대상 사업도 한정되어 있어 보증료 및 공제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한편,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적·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다수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동일한 기술·설비를 활용하여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양 부문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보증·공제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공제조합 신설에 따른 초기 구축 비용 및 고정 운

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함)를 포함시키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방위산업 생태계의 유지·확장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에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하면서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에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금 등의 구매알선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21조 신설).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20호)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사용·관리하는 장비·부품 및 시설 등 제반요소를 군수품이라 하며 이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한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위산업공제조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요구되는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을 통해 방산업체 등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그 밖에 군수품(각종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방탄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투지원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초적인 보증 및 공제 이용에도 배제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렴한 보증 및 공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결과적으로 납품비용을 낮추어 전력지원체계 수출역량 강화, 국방예산 절감 및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발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 추가

□ 개정안은 방위산업공제조합¹⁾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방산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도 ‘우주항공사업’에 관련된 보증, 공제사업,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알선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④ ~ ⑥ (생략)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u> 」 <u>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u> ④ ~ ⑥ (현행과 같음)

1) 이하 “방산공제조합”이라 함.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조합원인 우주항공사업자와</u> <u>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u> <u>가.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u> <u>나. 우주항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u> <u>다. 우주항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u> <u>라. 우주항공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u> <u>마. 우주항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기자금 등의 구매알선</u>
6. <u>방위사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u> 7. (생략) 8. 조합원이 수행하는 <u>방위사업</u> 에 관한 정보의 처리 9. ~ 12. (생략)	6. <u>방위사업 및 우주항공사업</u> ----- 7. (현행과 같음) 8. ----- <u>방위사업</u> <u>및 우주항공사업</u> -- 9. ~ 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 ----- ----- -----.

□ 현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²⁾에 따르면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 연구기관 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방산업체 등은 공제조합의 정관³⁾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⁴⁾

방산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사업’과 방위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① 방산업체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④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방위산업공제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 제20조제3항의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좌수 2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를 하지 않는 자는 준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준회원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 공제사업은 이용할 수 있으나, 지급보증·용자 등은 이용할 수 없음. 2026년 2월 현재 정회원 175명, 준회원 53명임.

4) 참고자료 1. 방위산업공제조합 개요

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상과 제조·생산·연구·시설·장비 등에 관한 각종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⁵⁾⁶⁾

□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방산공제조합 가입 대상으로 무기체계 등 방위사업 관련 수행업체인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방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체 등은 방산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우주항공사업자를 방산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포함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개정안은 방산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하여 동 업체가 우주항공 관련 사업⁷⁾을 추진할 때 방산공제조합의 보험 상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2.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
3. 조합원이 방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5.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기자금 등의 구매알선
6. 방위사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합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8. 조합원이 수행하는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9.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투자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6) 또한 국방부훈령인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경우 방위산업 보험목적물은 보안관리를 위해 2개의 보험협회(화재보험·손해보험) 및 방산공제조합을 통해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3조(보험 및 손해사정) ① 방산업체의 보험목적물을 취급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보험기관”이라 칭한다.)은 보안측정을 통해 보안요건 구비가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 업무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인원이 처리하도록 해야 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방산업체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보안책임을 진다.

7) 항공산업은 ① 항공기 제조산업, ② 항공운송산업, ③ 항공정비·개조·개량산업으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우주항공산업의 ‘항공’산업은 ①과 ③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생산(제조·수리

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의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첫째, 우주항공산업은 고위험·고비용 구조를 가진 산업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충돌·추락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막대한 손해배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으로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재해 등에 관한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등 사업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수적이나, 우주항공산업체를 위한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인해 현재 민간 보증·보험 상품에 의존하여 사업수행 및 사고위험에 대응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민간 보증기관의 경우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보증료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의 보험·보증료로 인해 우주항공산업체에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⁸⁾

둘째,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⁹⁾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¹⁰⁾

·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및 연구개발 관련 제반사업에 국한되고, ② 항공운송산업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등 항공기사용자가 그 운항상의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함

8) 참고자료 2. 개정안에 따른 우주항공사업자의 비용절감 효과

9)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①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에 따르면, ‘우주물체 발사자’는 발사체 관련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주보험(위성 및 우주발사체)의 경우 현재 특정 해외 보험 중개사의 독점을 통한 재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높은 보험료가 책정될 뿐만 아니라 국부 및 기술 유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음.

우주경쟁 시대에서 민간 기업의 위성 발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¹¹⁾에서 부품 등 납품업체인 중소기업들도 방산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보증료 절감뿐만 아니라 운송보험, 납품 부품 결함·오류 등에 대한 배상보험 등 다양한 보증과 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¹²⁾

셋째,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적·산업적 연관성이 매우 높아 현행 방산공제조합원의 상당수¹³⁾가 우주항공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이에 대응하듯 2026년 2월 4일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K-LEO Industry Council)’가 설립되었는데, 위성통신 서비스사 및 우주 기업들이 협력해 저궤도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통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는 국가 우주 개발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고 민·관·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협의체로 △위성체 △지상체 △단말기 △통신서비스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참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2026. 4. 4.자 서울경제, “방사청, 민관군 합동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 출범식 개최”)

12) 방산공제조합의 경우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하여 민간 보증기관 대비 최대 80~90%p 할인된 보증 수수료로 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자료: 방위산업공제조합)

13) 현재 방위산업공제조합 228개 조합원 중 우주항공산업분야 방산·민수 중복 수행업체는 2026년 2월 기준 총 74개(약32.5%)로 전체 조합 출자액 중 약 73%의 지분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자료: 방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방산공제조합의 기존 조합원은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 부문’ 사업에 한정하여 조합의 보증·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민간 우주항공산업 부문’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는 방산공제조합의 보증·공제상품을 활용할 수 없음.

예컨대, 동일한 기술·설비를 활용하여 같은 제품을 제조한 사례에서 방위사업청이 동 제품을 군수용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방산공제조합의 보증·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나, 우주항공청이 민수용으로 발주할 경우는 보증·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함.¹⁴⁾

□ 다만, 이와 같은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민간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음.

그러나 개정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채용, 초기 운영비 등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이 신설되더라도 다른 산업분야에 비교하여 우주항공산업체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범위·규모도 한정되어 있어 보증료

위산업공제조합).

14) 예컨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존 조합원의 경우 민수용 위성 및 우주발사체 관련 사업, 민수용 항공기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의 보증·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고, 성층권 드론 개발 및 제작 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공제조합의 보증·공제상품 이용이 가능하나, 우주항공 민수용으로 추진하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및 공제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¹⁵⁾

둘째, 법 제20조제1항¹⁶⁾의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산공제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그러나 민수용 우주발사체와 항공기의 각 부품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기존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데,¹⁷⁾

개정안과 같이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방산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공제 제도 등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방위산업 관련 우주항공 분야 공제사업에서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민수혁신기업의 방위산업 유입 등 방위산업 생태계의 유지·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들의 열악한 자산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들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¹⁸⁾

15) 방위산업공제조합 및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도 동일한 의견임.

1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① 방산업체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7)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주항공산업 업체 수는 860개인데, 이 중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는 72개에 불과함.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이 기술적·산업적으로 밀접하여 다수의 우주항공산업체가 양 부문에 걸쳐 사업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방산업체 및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효율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에도 법조문의 간결화 및 법해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수정 논의가 필요함.

즉, 방산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안처럼 제21조제1항에 제5의2호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21조제1항 각목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2.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3. 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5. 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6.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25.]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 7. 25., 2012. 1. 26.>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조달·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 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공제 및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호 이하 생략)

[개정안 제21조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u>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u>」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u>항공우주산업사업자</u> 및 「<u>우주개발 진흥법</u>」 제2조제7호에 따른 <u>우주사업자</u>(이하 “<u>우주항공사업자</u>”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u> 2. ~ 5. (현행과 같음) 5의2. <u>조합원인 우주항공사업자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u> 가. <u>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u>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 ----- -. 1. <u>조합원의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u> 2.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개 정 안	수 정 의 견
<u>나. 우주항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조·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u> <u>다. 우주항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u> <u>라. 우주항공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u> <u>마. 우주항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 등의 구매 알선</u> 6. <u>방위사업 및 우주항공사업</u>----- --- 7. (현행과 같음) 8. ----- <u>방위사업 및 우주항공사업</u>----- 9. ~ 12. (현행과 같음)	6. ~ 12.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② <u>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2.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를 추가

- 개정안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 군수품 납품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u> ④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 「방위사업법」 제3조19)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사용·

19)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제로 구분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장비·부품 및 시설 등 제반 요소를 군수품이라 하며, 이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산공제조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요구되는 보증 및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에서는 방산공제조합 가입 대상으로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군수품 중 ‘무기체계’ 및 관련 부품 납품업체는 모두 방위산업과 관련한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 해당하지만,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는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에 해당함.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일반업체 등 구분]

구 분	정 의
방산업체	방산물자 ²⁰⁾ 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군수품 ²¹⁾ 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

20)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

따라서 각종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방탄복,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군수품²²⁾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방산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개정안은 전력지원체계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국방조달과 방산역량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업체들도 방산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증 및 공제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다음의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1) 「군수품관리법」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2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영 제2조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별표 4와 같고,영 제2조의2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별표 5와 같다.

제8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등)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국방부(자원관리실장)가 군수품을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구분·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무기체계로 보며, 운용목적, 용도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 가. 군사작전에 직접 운용되거나 전투력 발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비·물자
 - 나.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물자
 - 다.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술 훈련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방M&S체계는 무기체계로 본다.
 - 가. 전투력 운용과 능력배양에 직접 관련이 되는 모델
 - 나. 전투력 운용과 전력증강 타당성 분석을 위한 모델
 - 다. 무기체계 획득과 직접 연계되는 모델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존장비나 주장비와 달리 별개의 무기체계로 본다.
 - 가.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으로 운영개념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 나. 무기체계의 구성장비로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고 타무기체계에 탑재, 연결,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
 - 다. 그 밖에 별개의 무기체계로 결정된 경우

첫째,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는 현재 고액 민간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 등을 해결함에 따라 기업의 재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국방력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²³⁾

따라서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도 선택적으로 방산공제조합의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최근 전장환경이 자동화·무인화·네트워크화 등으로 전력증강에 있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추세이고, 전력지원체계 군수품에 대한 전력 증강도 자주국방 기반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방위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방산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보험사업 등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음.²⁴⁾

그러나 전력지원체계 군수품 획득 역시 “방위사업 수행”에 해당됨에도, 현행 제20조에서는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업체 군수품 납품업체는 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3)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보험료 30%를 줄여 산업에 재투자 선순환(2023.12.4.자 파이낸셜뉴스)

24) 또한 「방위사업법」 제1조는 방위사업의 범위를 ①방위력개선, ②방위산업육성 및 ③군수품(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조달로 정의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제1조(목적)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전력지원체계 조달업체도 방산공제조합 가입하여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 조성 및 방산육성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함.
- 다만, 현행 방산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모두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방산공제조합 가입 대상 규정]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0의2.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위산업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일반업체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즉, 개정안 제20조제3항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20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서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일반연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정안 제20조제3항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로 수정이 필요함.

[개정안 제20조제3항제3호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u>아니</u> <u>하는 그 밖의 군수품을 납품하</u> <u>는 업체</u>	1.·2. (현행과 같음) 3. 「방위사업법」 제3조제9의3호에 <u>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u> <u>체</u>
④ ~ ⑥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312

※ 참고자료

1. 방위산업공제조합 개요

□ 설립목적

- 방산업체의 자율적인 경제활동 도모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증 및 공제(보험)사업을 수행

- 보증사업 : 방위사업 추진 관련 이행보증(입찰·계약·선금급, 수출 등) 등 제공
- 공제사업 : 방위사업 추진 간 손해배상책임 보장,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

□ 설립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 * 보증·공제사업의 안전성·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방위산업진흥회 보증사업본부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여 공제조합 설립('21.7월 출범)

□ 조합현황

- (가입현황) 방산업체 69개社, 일반업체 145개社 등 총 214개社
- (사업규모) 보증사업(보증규모 30.2조원), 공제사업(보험가액 53.2조원) 운영 중
- (자산현황) '24년 재무제표 기준 약 3,977억원(자본 2,896억 원, 자기자본 비율 72.8%), 당기순이익 26.86억원

□ 공제조합 규모 세부 (최근 5개년)

구분		방진회			공제조합('21.7월 출범)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10월
조합원	방산업체	73개社	70개社	69개社	69개社	67개社	65개社	65개社
	일반업체	76개社	69개社	63개社	70개社	83개社	88개社	102개社
	소 계	149개社	139개社	132개社	138개社	150개社	153개社	167개社
준조합원	방산업체	-	-	1개社	3개社	2개社	3개社	4개社
	일반업체	-	-	1개社	12개社	19개社	29개社	43개社
	소 계	-	-	2개社	15개社	21개社	32개社	47개社
합 계		149개社	139개社	134개社	153개社	171개社	185개社	214개社
출자규모		2,582억원	2,700억원	2,534억원	2,675억원	2,826억원	2,935억원	3,005억원
보증규모		16조 595억원	17조 7,330억원	18조 8,377억원	22조 191억원	23조 3,795억원	28조 1,532억	30조 1,577억
공제규모 (가입금액)		-	-	35억원	20조 5,316억원	24조 1,306억원	41조 292억원	53조 2,353억원

* 준조합원 : 출자 없이 조합의 공제사업만 이용 중인 조합원

2. 개정안에 따른 우주항공사업자의 비용절감 효과²⁵⁾

□ 위성 보험료 절감 및 국부유출 방지 효과

[주요 민수 위성보험 가입 금액 현황]

구분	보험료			
	총액	발사전 보험	발사 보험	궤도 보험
다목적3	US \$ 20,039,644	US \$ 232,573	US \$ 16,141,315	US \$ 3,665,756
다목적5	US \$ 15,690,794	US \$ 178,504	US \$ 13,578,708	US \$ 1,933,583
차중1	\ 5,126,206,760	₩ 263,350,000	₩ 4,564,856,780	₩ 297,999,980
천리안1	US \$ 24,797,876	-	US \$ 21,302,505	US \$ 3,495,371
천리안2A	US \$ 17,023,337	US \$ 379,544	US \$ 14,459,660	US \$ 2,184,133
천리안2B	US \$ 17,709,934	US \$ 399,183	US \$ 14,756,106	US \$ 2,554,645
다누리	\ 412,860,710	₩ 412,860,710	-	-

→ 위 위성들에 대한 보험을 방산공제조합 이용 시

① 95,261,585달러('25.10.16 기준 환율 적용 시 135,071,401,372원), 국부유출 방지 효과

② 방산공제조합의 요율로 산정시 24,904,269,425원(20%) 보험료 절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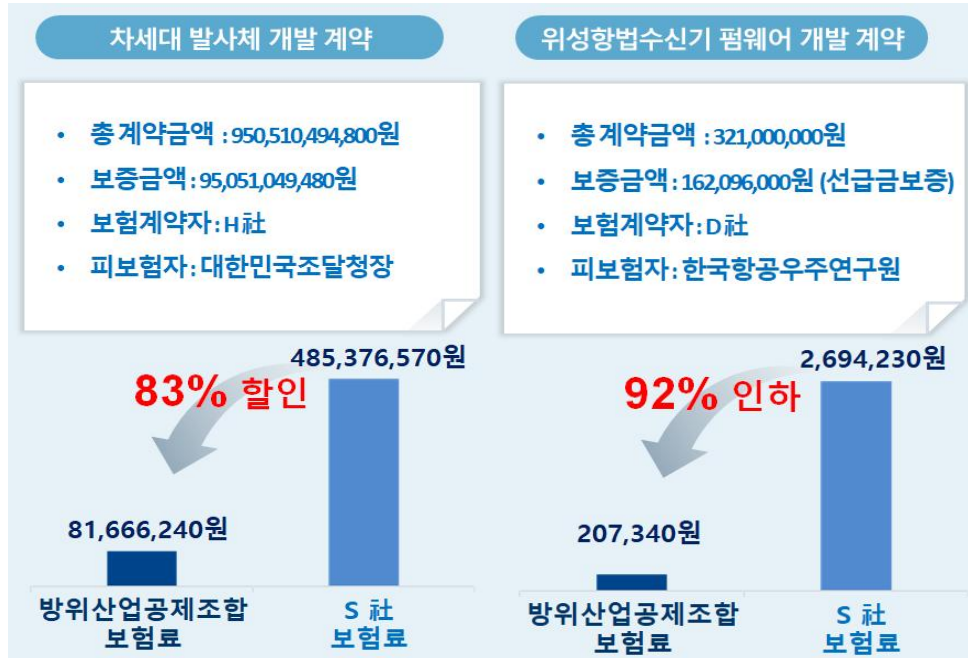
※ 방산공제조합의 발사전보험, 발사보험, 궤도보험 요율 적용시로 산정

※ 법 개정 후 국내보유분 10%~20% 확대, 중장기(3~5년 후) 국내 (재)보험사 보유 증대 및 방산공제조합 보유 포함 50% 확대

25) 자료: 방위산업공제조합

□ 위성 보증료 절감 효과

[방산공제조합과 민간보증사 보증료 비교 현황]



➔ 방산공제조합 이용 시

민간보증기관 대비 최대 80~90%p까지 보증수수료 절감으로 민수 우주사업 겸업 중인 방산업체의 비용 절감으로 경영부담 완화 가능